

# 의안검토보고

의안 번호	제 245 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02. 2. 5.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 재 근		

## 1. 검토내용

### 가.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 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촉진기금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
-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관리 (안 제2조 내지 제6조)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등 (안 제7조 내지 제10조)
- 기금운용계획 등 (안 제11조 내지 제15조)

## 2. 검토결과

### □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 규정에 위반한 시설의 개선이행명령 등 조치 후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비용으로 시설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기금의 조성 :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서초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 (안 제4조)
- 기금의 용도 : 장애인편의시설 교육, 홍보, 편의시설 비용의 용자, 보조 사업 (안 제5조)
- 기금운용심의회구성 : 위원장(부구청장)을 포함 9인以内 위원으로 구성 (안 제7조)
- 기금운용계획 : 회계연도 마다 연도 개시전에 기금심의회 심의후 계획수립 (안 제11조)
- 기금의 용자 및 보조 : 용자절차 및 한도, 조건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12조)

###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동법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위반된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징수 금액의 50% 및 서초구출연금, 수익금, 기타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 용자 또는 보조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 제1항에 시설주관기관(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시정명령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 제5항에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1회 시정 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제8항에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 사용용도는
  -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 편의시설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10항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이행강제금징수액의 사용절차 규정에 의하면

시설주관기관(구청장)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은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 징수한 이행강제금중 편의시설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시설주관기관(구청장)은

매년12월말일까지 다음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이행 강제금부과 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3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o 위 내용을 종합검토한 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정수한 이행강제금중 보건복지부의 편의시설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도록 명문규정은 없음.
- 다만, 시설주관기관(자치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도록 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서울특별시 장복 65142-895 (2001. 6. 15) 호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구 조례 제정후 조례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임.
- 이와관련하여 조례제정 실태를 확인한 바,
  - 타시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제정 실적이 없으나,
  - 서울자치구중 용산, 광진, 은평,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영등포, 강서, 금천, 강동 등 11개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조례안중

- 안 제5조 제3호는 동법 제28조 제8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며,
- 안 제11조에 기금의 운용계획은 있으나, 기금의 결산은 내용이 없으며 이와 관련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 4, 5항 조문이 적용되도록 내용중 일부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사항으로

우리구의 특별회계를 제외한 각종기금설치조례는 서초구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한 12개 기금이 있으며, 2001말 현재 등록 장애인은 4,910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495명으로 총인구 393,849명의 5.2%임.

### 3. 참고사항

#### □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3조, 제28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5조
- 동법시행규칙 제8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33조
- 지방재정법 제110조
-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표준안 내용 (서울시)
- 서울특별시강동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촉진기금조례

## [ 관련법령 ]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 공동주택
5. 교통수단
6. 통신시설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1〉

**제11조 (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시기, 실시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시정명령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 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게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등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8조 (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 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⑦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징수액의 100분의 50은 부과권자가 사용하되,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용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조 (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제15조 (이행강제금징수액의 사용절차) ①법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주관기관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시설주관기관은 징수한 이행강제금중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계정에 납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예산 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

### **< 동법시행 규칙 >**

- 제8조 (징수된 이행강제금의 운용계획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이행강제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시설주관기관은 전년도의 이행강제금부과·징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

-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4. 3. 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 3. 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재정법 >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 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체를 발행할 수 있다.〈신설 1991. 12. 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31〉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 12. 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1994. 12. 22〉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조례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조례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 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시설설치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2. 강동구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생활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원 :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

③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국장

2. 강동구의회의원

3. 장애인복지 및 편의시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행정과장이 된다.

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결원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8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관리·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 ①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을 법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 주로 한다.

**제12조 (융자 · 보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주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융자금 및 보조금을 사용용도에 반하여 사용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융자금 및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강동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